



창업과 세금 (2)

I. 창업과 세금

1.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

법인은 개인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원천징수는 개인 사업자와 같습니다.

1)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

- 법인사업자는 매출세액(공급가액 10%)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.

$$\text{부가가치세} = \text{공급가액} \times 10\% - \text{매입세액}$$

-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·납부합니다.

구 분	제 1 기		제 2 기	
	신고사항	신고기간	신고사항	신고기간
예정신고	1.1 ~ 3.31 실적	4.1 ~ 4.25	7.1 ~ 9.30 실적	10.1 ~ 10.25
확정신고	4.1 ~ 6.30 실적	7.1 ~ 7.25	10.1 ~ 12.31 실적	다음해 1.1 ~ 1.25

2)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

-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.

-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, 자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.

$$\text{각사업연도 소득} = \text{총익금} - \text{총손금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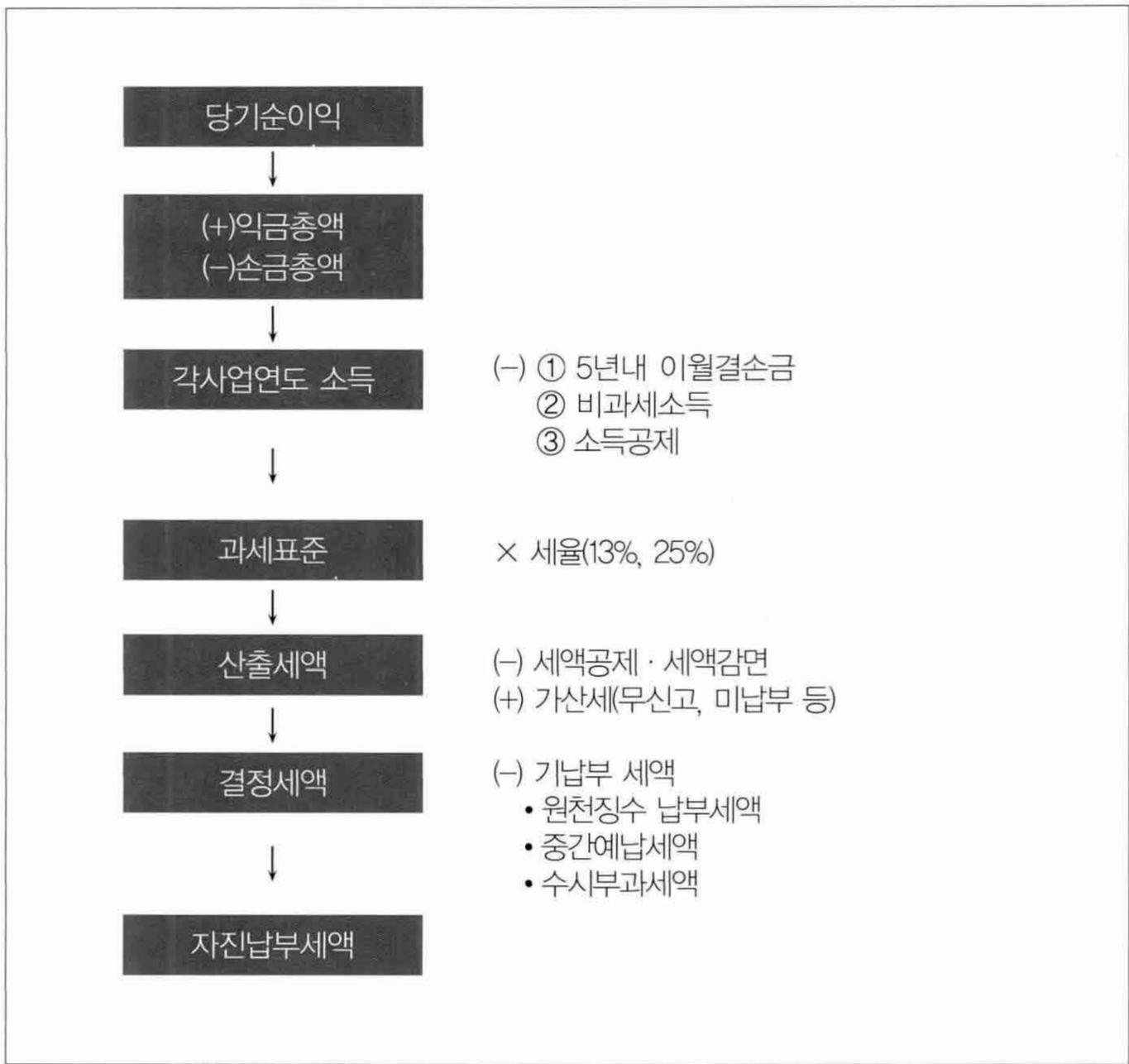
- 익금 :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금액, 자산의 평가차익,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도 익금에 포함됩니다.
 - 손금 : 제품의 원가 및 인건비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,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며 세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특정 손금이 있습니다.
-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, 비과세소득,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이며, 법인세율을 곱한 것이 법인세 산출세액입니다.

$$\text{법인세 과세표준} = \text{각사업연도 소득} - \begin{matrix} \bullet \text{이월결손금} \\ \bullet \text{비과세소득} \\ \bullet \text{소득공제} \end{matrix}$$

- 법인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과세표준 금액	세 율
1억원 이하분	13%
1억원 초과분	25%

○ 법인세 과세체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

6월세무일지

2) 법인세 신고방법

○ 법인세 신고기한

-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내 『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』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○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

-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
-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결손금처리계산서)
- 세무조정계산서
- 기타 부속서류



○ 법인세의 납부

- 법인세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을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, 홈택스서비스 · 인터넷 · ARS · ATM 등을 이용하여 전자납부 하여야 합니다.

○ 법인세의 분납

-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분 중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내(중소기업의 경우 45일내)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○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

-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에 법인세액의 10%를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· 군 · 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.

2. 전자신고 안내

전자신고란 납세자가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.

1) 홈택스서비스 가입

○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- 인터넷으로 가입하기
 - 본인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 접속



- ② [회원가입] 클릭
- ③ [공인인증서로 가입] 클릭
- ④ 개인은 주민등록번호,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[조회] 클릭
- ⑤ 가입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
- ⑥ 사용자아이디, 비밀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서비스 이용범위의 '전자신고'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여 [저장] ⇨ 【가입완료】

- 세무서 방문하여 가입하기

-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서비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「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」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 - ※ 이때 3. 공인인증서 발급란의 “공인인증서 발급희망”을 선택한 경우에만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 - * 「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」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② 세무서 담당직원이 신청서를 입력합니다.
- ③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[일반사용자 로그인] 화면에서 신청서에 기재한 사용자아이디/비밀번호로 로그인 한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.
- ④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[공인인증서-공인인증서 발급]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.

2) 전자신고 요령

○ 신고서 작성방식(납세자)

- 전자신고 작성프로그램 설치

- 홈택스홈페이지 로그인 ⇨ [전자신고] ⇨ [세목선택] ⇨ [신고서작성]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설치 됩니다.

- 신고서 작성 및 전송

전자신고 작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서를 전송 합니다.

- 신고서 접수결과 확인

- 신고서를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되어 상호,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[신고현황 조회]에서도 접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○ 신고서 변환방식(세무대리인 또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체)

- 전자신고 작성프로그램 설치

- 홈택스홈페이지 로그인 ⇨ [전자신고] ⇨ [프로그램설치]에서 변환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.

6월세무일지

- 신고서 변환 및 전송
 - 세무회계 S/W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 후 홈택스홈페이지 로그인
⇒ [전자신고] ⇒ [세목선택] ⇒ [신고서전송]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전송 합니다.
- 신고서 접수결과 확인
 - 신고서를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되며 위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.



3. 창업하는 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드립니다.

가. 창업 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%를 감면해 줍니다.

1) 창업중소기업이란

○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

- 제조업, 광업, 부가통신업, 연구및개발업, 과학·기술서비스업, 전문디자인업, 방송사업, 방송프로그램 제작업, 엔지니어링사업,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, 물류산업, 영화산업, 공연산업, 관광숙박업, 관광객이용시설업, 국제회의업, 유원시설업, 광고업, 노인복지시설 운영업, 무역전시산업, 직업기술분야 교습학원을 영위하는 기업

* 수도권 과밀억제권역(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)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(강화군·옹진군·중구 운남동·운북동·운서동·중산동·남북동·덕교동·을왕동·무의동, 서구 대곡동·불노동·마전동·금곡동·오류동·왕길동·당하동·원당동, 연수구 송도매립지·남동유치지역 제외)
- 의정부시·구리시·남양주시(호평동·평내동·금곡동·일패동·이패동·삼패동·가운동·수석동·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)·하남시·고양시·수원시·성남시·안양시·부천시·광명시·과천시·의왕시·군포시·시흥시(반월특수지역 제외)

○ 창업 후 2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

○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

-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(Business Incubator)로 지정된 사업자

2)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

-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(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%를 매년 감면합니다.

$$\text{감면세액} = \text{필요경비} \times \text{기타소득금액} \times \frac{\text{감면소득}}{\text{과세표준}} = 50\%$$

- 다만, 창업후 2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,
-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

나. 취득세·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됩니다.

1) 등록세 면제

-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됩니다.
(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행하는 법인 설립등기 포함)
- 또한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며
 -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됩니다.

2) 취득세 면제

- 창업일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.
-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.

3) 재산세 감면

-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재산세의 50%가 감면됩니다.

다.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)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

2)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

- 개인의 다음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%(당해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%한도)를 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.